

마. 건축물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	
	명 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	
기정	마포로5구역 제9-1지구	1,591.6	획지	1,591.6	중구 순화동 6-11 번지 일대	주거	60이하 (저층부 71이하)	1,030이하	70이하	-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기정	구 분					세 대 수	비 율(%)	비고		
		합 계					136	100.0			
		공동주택 (도시형 생활주택)	소 계				102	75.0			
			일반분양				59㎡	63	46.3		
			장기일반민간임대				59㎡	39	28.7		
		오피스텔	소 계				34	25.0			
			일반분양				52㎡	17	12.5		
							82㎡	17	12.5		
	변경	구 분					세 대 수	비 율(%)	비고		
		합 계					136	100.0			
		공동주택 (도시형 생활주택)	소 계				102	75.0			
			일반분양				59㎡	63	46.3		
			장기일반민간임대				59㎡	39	28.7		
		오피스텔	소 계				34	25.0			
			일반분양				117㎡	17	12.5		
							119㎡	17	12.5		

※ 기 결정고시(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37호)의 오피스텔 규모 오기 정정(52㎡,82㎡ → 117㎡,119㎡)

2.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: 생략
3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76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41호

도시관리계획[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(경미한 사항) 및
지형도면 고시(예장동 1-128 외 9필지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32호(2021.9.23.)로 결정 고시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2차 중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2.4.2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1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I. 결정(변경) 취지
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지정된 예장동 1-128 외 7필지와 필동2가 128-36, 128-6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 변경(해제 및 지정)하는 사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함
- 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조서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
다. 공동개발(변경)
1)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구분	가구번호	구분	위치	면적(㎡)		비 고
기정	-	공동개발 지정	예장동 1-128	122.3	325.9	
			예장동 1-130	195.0		
			예장동 1-129	8.6		
	-	-	필동2가 128-36	624.7	-	
	-	공동개발 지정	필동2가 128-5	433.1	607.6	
			예장동 1-2	132.2		
			예장동 1-125	32.2		
			예장동 1-192	5.1		
			예장동 1-3	5.0		
			-	필동2가 128-6	624.9	